

『구미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개정에 따른 기금 일몰제도를 조례에 반영하여 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고,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제명 변경
 - 가. 당초 : 구미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
 - 나. 변경 : 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- 기금 일몰제도를 반영한 조항 신설(안 제2조)
 - 가. 기금의 존속기한 : 2021년 12월 31일까지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기금 일몰제도를 조례에 반영하고, 제명 변경 및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확히 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
- 지원기준이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